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우선지정일자리 선정 》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633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주요 검토사항	4

I.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63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일 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 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u> <u>③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2. 주요 검토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수요조사(4~6월), 지역협의체(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광역지방자치단체 참여) 후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차례로 사업량을 배분하고 있으나, 우선 실시 필요 일자리 등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도별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중 략)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특히, 우선 실시 필요성이 있는 ‘경로당 급식 지원 일자리’ 추진현황을 보면, 2024년 11월 기준 식사제공 경로당 비율과 식사제공 경로당별 급식 지원 일자리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기도 함.

< 식사제공 경로당과 급식 지원 일자리의 지역별 현황 >

(단위: 개소, %, 명, 회)

시도	경로당 수 (A)	식사제공 경로당(B)		급식지원 일자리(C)		주중식사 제공(평균)
			(B/A)		(C/B)	
합계	68,658	58,558	85.3%	76,859	1.3	3.4
서울	3,609	3,090	85.6%	9,733	3.1	3.3
부산	2,403	2,152	89.6%	1,974	0.9	3.3
대구	1,809	1,318	72.9%	2,331	1.8	3.3
인천	1,555	1,341	86.2%	2,492	1.9	3.7
광주	1,380	1,291	93.6%	1,768	1.4	3.6
대전	850	814	95.8%	1,013	1.2	3.0
울산	836	695	83.1%	904	1.3	3.0
세종	517	498	96.3%	404	0.8	3.2
경기	10,020	8,391	83.7%	10,387	1.2	3.1
강원	3,319	2,443	73.6%	6,064	2.5	3.2
충북	4,262	3,553	83.4%	3,829	1.1	4.4
충남	5,924	5,414	91.4%	6,788	1.3	2.9
전북	6,860	5,536	80.7%	5,854	1.1	3.6
전남	9,211	8,166	88.7%	6,271	0.8	3.6
경북	8,055	7,685	95.4%	9,027	1.2	3.1
경남	7,575	5,929	78.3%	5,918	1.0	3.8
제주	473	242	51.2%	2,102	8.7	3.9

* 주: 경로당 수는 2024.4.30. 기준, 급식지원 일자리 사업량(누적)은 2024.11.30. 기준

*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현실에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 등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선정하여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 등 노인일자리 정책의 효율적·통일적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¹⁾.

1) 유사입법례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에 따른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 고시)이 있음.

□ 다만, 우선지정일자리 대상을 노인공익활동사업에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바, 일례로 경로당 급식 지원 일자리와 관련하여, 배식 지원의 경우 노인공익활동사업을 통해, 조리 지원의 경우 노인역량활용사업²⁾을 통해, 반찬 등 부식 지원의 경우 공동체사업단³⁾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 취약계층 급식 지원 노인 일자리 현황(2021~2025) >

(단위: 개)

유 형		2021	2022	2023	2024	2025
노인공익 활동사업 (공익 활동형)		54,717	63,043	66,958	74,723	77,027
	노노케어	512	304	303	352	220
	경륜전수 활동	606	649	548	525	293
	공공시설 봉사	53,567	62,070	66,107	73,846	76,514
	지역상생활동	32	20	—	—	—
노인역량 활용사업 (사회 서비스형)		349	620	1,330	2,136	7,467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202	489	1,227	1,657	7,197
	공공전문서비스	48	80	43	5	66
	기타	99	51	60	474	204

* 자료: 보건복지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실적이 부진한 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취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2)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노인공익활동사업 세부 프로그램: 공공시설봉사-**경로당 급식(배식 등) 지원**
- 노인역량활용사업 세부 프로그램: 취약계층전문서비스-노인 관련 시설 지원-**경로당 급식지원사업(조리 등)**

3)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공동체사업단 사업유형 중 ‘식품 제조 및 판매’(**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 개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지정일자리의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외에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이 있으므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체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기관 의견 >

보건 복지부	◦ 약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지정일자리의 운영 필요성에 공감함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외에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이 있어 포함 필요 - 우선지정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
한국 노인인력 개발원	◦ 노인 일자리는 지역 여건과 수행기관의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인공익활동사업 외에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에도 우선지정일자리 적용하는 것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9